

1. 개정이유

인권침해를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른 업체로 이동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950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서식을 정비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되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승선근무예비역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서식 정비(별지 제31호의9서식)
- 나.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명칭 개선(안 제46조의2)
- 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규정 정비(안 제48조 및 별지 제53호의2서식)
- 라.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신청 처리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규정 정비(안 제88조 및 별지 제108호서식)
- 마.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상 동원훈련 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정

비(별지 제86호서식(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제2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48조제3항제2호나목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해당한다)”를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8조제3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31호의9서식의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뒤쪽)

일반약정

1. 본 서약은 해운·수산업체(고용주)와 승선근무예비역(피고용인) 간의 고용계약 내용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승선근무예비역의 준수사항

- 가. 해당 업체의 선박(해운업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500톤 이상, 수산업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에서 항해사·기관사로서 성실히 복무해야 하며, 해운·수산업체(고용주)의 이해에 반하여 이득을 취득하거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해운·수산업체로 이동하여 근무해야 한다.

- 1) 복무 중인 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 2) 복무 중인 업체가 감선 등의 사유로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동근무할 수 있다.
- 1)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9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행위에 대해 해양항만관청등에서 위법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 2) 「선원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 3) 승선근무 중인 선박의 매각 등으로 복무 중인 업체의 선박에서 승선근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라. 군사교육소집에 적극 참여하여 입영훈련에 최선을 다한다.

승선근무예비역 : _____ (서명 또는 인)

3. 해운·수산업체(고용주)의 준수사항

- 가. 승선근무예비역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나.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을 조건으로 병역의무자들에게 금품 또는 부당행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 다. 승선근무예비역을 해운·수산업체의 선박(해운업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500톤 이상, 수산업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에서 항해사·기관사로 승선근무하게 해야 하며, 다른 업무에 복무시켜서는 안 된다.
- 라. 승선근무예비역을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서 같은 업무에 복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 마.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되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 바. 승선근무예비역이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2항 전단에 따라 이동근무를 희망할 때에는 즉시 이동근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정하는 이동근무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사. 「병역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게 근로조건에 따른 권리와 권리 침해 시 신고 방법 등에 대하여 고지해야 한다.
- 아. 승선근무예비역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한 것을 이유로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4. 본 서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선원법」, 「근로기준법」 및 「선박직원법」에 따른다.

해운·수산업체(고용주)의 본 계약을 위한 기관 또는 대리인: _____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3호의2서식의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광업원부 등본(광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업체만 해당한다) 1부 2. 해당 업체의 사업에 관한 허가증·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에너지산업, 광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만 해당한다) 1부 3. 방위산업체 지정서 사본(방위산업체만 해당한다)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광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업체는 제외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공장등록증명서(공업분야 제조업체만 해당한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신청인 동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선박보유현황의 업종은 연해, 근해로 구분하여 적고 소유 구분은 자산소유, 임차 또는 선박관리로 구분하여 적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연구기관 선정: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주소 및 연구분야를 적습니다(신규로 연구기관과 산업체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규 신청란에 √표시를 하고 주 연구분야를 적습니다).

별지 제86호서식 앞쪽 제4호 중 “경우”를 “경우 병역법 제93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앞쪽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동원훈련 참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

하거나 관할 지방병무(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08호서식 뒤쪽 제12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번호는 제외)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제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31호의9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예술·체육요원의 추천원서 등) 영 제68조의11제2항(영 제137조제1항제6호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 서식의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예술·체육요원의 추천원서 등) ----- -----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 사본(영 제68조의11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2. <u>국가무형유산</u> ----- ----- ----- -----
제48조(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①·② (생략)	제48조(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전자정부법」	③ ----- ----- -----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나목, 제2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생략)

2.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생략)

나.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생략)

④ (생략)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 해제 등) ①·② (생략)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현행과 같음)

나. 사업자등록증명-----

----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 해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삭 제 2. ~ 12. (생 략) <u>13. 사업자등록증</u> 14. ~ 21. (생 략)	③ ----- ----- ----- ----- -----. ----- ----- ----- -----. 2. ~ 12. (현행과 같음) <u>13.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u> 14. ~ 21. (현행과 같음)
---	--